

민영임업 활성화 방안

— 경영정책을 중심으로 —



최민호
산림경영부장

정책기조에 따라 신임정의 방안이 구상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을 양축으로 하여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민영임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어도 다음 몇가지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믿어진다.

2. 임업구조정책

경제임업의 첫번째 과제는 임업구조개선이다. 우리나라의 임업은 그 발전과정으로 보아 이른바 프러시아형에 속한다 할 수 있으며, 임지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임업경영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임업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임업경영체를 형성하는 일이 임업근대화의 첫째 과제며, 임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다. 금년에 제정된 임업협동조합법도 그 성패 여부는 바로 임업구조개선에 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임지의 단지화, 기계화 및 임업경영의 협동화도 임협조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임산물유통정책

경제임업의 두번째 과제는 임산물유통정책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동안 나무를 길렀어도 나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임업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물량적인 생산정책보다도

1. 서언

임정이란 말 가운데는 산림정책과 임업정책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산림정책은 대물정책으로서 임지와 임목 등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녹화정책, 자원정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반면, 임업정책은 산림에 인간요소를 포함하여 임업에 관한 산업정책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뜻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임정은 건국이래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중심과제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국토녹화가 완성되면서 임정의 기조를 산림정책 단계를 넘어서 임업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요청되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약 7~8년동안 임정기조전환없이 과도기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금년 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로 신경제의

● 새 임정의 기본 방향은 그간의
녹화임정에서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으로의 전환이다.
민영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임업구조정책, 임산물 유통정책,
생산유인정책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

더 중요시 해야할 정책이 유통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목재시장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녹화정책 당시 근시안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유래한다. 나무값이 좋으면 돈벌이가 되고 돈벌이가 안될수록 국토녹화가 빨리되기 때문에 목재시장을 되도록이면 좁혀서 나무값을 떨구는 것이 국토녹화의 지름길이라 믿어왔다.

그 결과 임산물의 시장은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등으로 철저히 대체되었고, 목재소비를 억제해 왔다. 이것이 국산재가격이 생산비를 밀들고 임업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며, 임업이 근대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경제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앞장서서 목재시장을 넓히고 나무값을 제대로 받게끔 해야할 일이다. 간벌재등을 그 형질에 알맞게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집단주거지나 학교, 공원 등 일정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산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과거 좁혔던 목재시장을 나라가 능동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목재유통공사」와 같은 특수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4. 경제임업의 세번째 과제는 생산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적절한 임업투자유인책을 개발

하는 일이다. 수익율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유인수단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그것만이 유일한 투자동기는 아니다. 가령 후손을 위한 유산성동기나 보험축적성동기등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메뉴는 많을 것이므로 다양한 동기에 호소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국민들의 빼어난 교육열을 보면 자기희생을 통하여 후손을 길르려는 심성이 다른 어느나라 사람들보다 강하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유산으로서 아람들이 숲을 가꾸어 대대로 물려준다면 얼마나 존경받는 조상이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자손들의 분가나 가족의 병고등 우발적인 뜻돈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가 일생에 몇번씩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를 위하여 산에 나무자원을 비축해 둔다면 가장 든든한 보험이요. 축적수단이 아닐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5.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임업의 요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환경임업의 개념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산림의 공익기능의 빛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민영임업의 차원에서는 시장없는 산림환경재를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환경서비스를 특수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산

자에게 수익의 대가가 환원되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환경임업은 92년 리우회의 이후 대두된 현대 임업의 새로운 차원이라 할 것이나 시장경제 질서의 테두리안에서 환경문제를 풀어나가는 방 편으로서 제시된 처방으로서 이른바 내부화 (internalization) 개념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유료 휴양림경영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임업은 종전처럼 나무를 오랜 세월동안 길러서 베어냄으로써 수입을 올릴 뿐 아니라, 나무를 베지 않고 세워둔 채 기르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서비스를 그 수혜자들에게 팔아 수입을 올리는 임업의 형태가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 마지막으로 새임정의 법제화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임업의 특성상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책의 안정성(Stability) 확보가 긴요하다.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으로 요약되는 새임정을 추진하려면 산림법 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임정의 이념은 새 법제화를 통하여 확고한 국가의사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산림법이 산림을 녹화관리하기 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규제법에 반하여, 새임정을 담을 임업 기본법(가칭)은 국가가 임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산업이고, 임업이 처한 자연적, 사회·경제적 장애요소를 인정하며, 타산업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약속하는 법이라는 점이 현저히 다른 점이다.

금년에 제정된 임업협동조합법은 영세임업 자들의 자조조직을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면서도, 정작 그 모법이여야 할 임업기본법(가칭)이 결여된 것은 선후가 바뀐 감이 없지 않으므로 신임정의 목적과 기본적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제화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